

상주시의회 직무대리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2021년 12월 31일

상주시의회 의장 정 재



상주시 의회 규칙 제 32 호

상주시의회 직무대리 규칙안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상주시의회(이하 "의회"라 한다)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(이하 "대리"라 한다)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법정대리) 의장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, 출장, 그 밖의 사고(이하 "사고"라 한다)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으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.

1. 의장이 사고가 있으면 부의장이 대리한다.
2. 의회사무국장이 사고가 있으면 총무전문위원이 대리한다.
3. 총무전문위원이 사고가 있으면 직제상 순위에 따른 팀장이 대리한다.

제3조(지정대리) ① 제2조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 한 사유가 있으면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하려면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,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에 따른 직무대리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.

제4조(책임)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【별지】

직 무 대 리 명 령 서

1. 피대리자 직명

2. 대리자 직명

성 명

3. 대리기간

위와 같이 대리를 명함.

직

성 명

인